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법률 제1992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4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1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2호에”를 “제3호에”로 한다.

-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미만의 4개로 하여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법제처 제공>